

부산시립예술단 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채용 공고

부산광역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수준높은 공연문화를 이끌어 갈 참신하고 유능한 부산시립예술단 지휘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17년 11월 16일
부산광역시립예술단장

1. 채용 인원 등

구분	채용분야	신분	인원	직무내용	비고
부산광역시립 국악관현악단	부지휘자	연봉 계약직	1명	○ 수석지휘자 보좌 ○ 단원 연습 및 공연 지휘	

- ※ 채용조건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,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름
- ※ 계약방법: 최초 2년 계약, 성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
- ※ 지역인재(부산광역시) 우대 ▷ 서류전형 가점부여

2. 응시 자격 등

○ 응시자격
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채용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
 - ① 국내·외 대학 해당분야 학과 졸업자 중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
 - ② 국·공립·시립국악단에서 채용분야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자

3. 보수 수준

- 기존 연봉, 경력 등에 따라 별도 계약 체결함

4. 시험방법 등

① (1차) 서류전형

- 직무관련 경력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 서면심사
 - 직무관련 교육, 경력, 경험 등 평가

② (2차) 실기전형 ▷ 서류합격자 대상 실시 <별도공고>

- 전형장소 : 각 단별 연습실
- 전형방법 : 소속예술단원을 대상으로 지정곡 및 자유곡 연습지도 및 연주 실시

구 분	연습지도	실연주(실기평가)	지정곡 공개	비 고
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	1인당 60분	15분 연주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개	

③ (3차) 면접전형 ▷ 실기합격자 대상 실시 <별도공고>

- 전형일정 : 실기평가 당일 실시
- 전형방법 : 심층면접을 통한 역량평가 등
 - ※ 가점: 응시원서 제출 시 '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'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(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동시 적용) ▷ 실기전형 당일 제출
 - ※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사에서 불합격자로 판정되거나 본인이 임용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의 차순위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② 시험일정

공고기간	접수기간	시험구분	시험일시	전형장소	합격자발표
2017.11.16. ~11.27. (12일간)	2017.11.20. ~11.27. (18시 마감) (8일간)	서류전형	2017.11.29.	부산문화회관	2017.11.30. 14:00
		실기 및 면접전형	2017.12.05.	부산문화회관	2017.12.08. 14:00

※ 서류접수 마감시간 : 2017.11.27. 18:00까지이며, 이후 시간은 접수하지 않음

※ 면접시험일, 합격자 발표일 등이 변경될 경우 별도 알림

5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○ 원서교부 : 붙임 파일 사용

- ▷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(www.busan.go.kr) 정보공개-공지-공지사항
- ▷ (재)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(www.bscc.or.kr)의 커뮤니티-새소식

○ 접수처 :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▷ 우편접수 불가

- ▷ 방문 접수 : 부산문화회관(관리동 1층 경영지원팀 사무실)
 - 도시철도 2호선 대연역 5번 출구
- ▷ 이메일 접수 : bsculture1@bscc.or.kr
 - 이메일 접수 시 접수번호는 전자우편으로 발송(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용)
 - 서류접수 마감시간(2017.11.27. 18:00)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

6. 제출 서류 등

가. 공통사항(필수 제출)

- ① 응시원서 1부 <별지 제1호 서식>
- ② 이력서 1부 <별지 제2호 서식>
-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(자유서식)
- ④ 자유곡 악보 1부 ※ PDF 파일 형식 등 전자적 형태

나. 증빙서류 : 서류전형 통과 시 실기전형 당일 제출

※ 주요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됨

- ① 주민등록초본 1부(남자의 경우 병력사항 기재된 것)
- ② 학위증서(졸업증명서) 1부
 - ▷ 대학교(전문학사)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,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장 사본 제출
- ③ 재직 및 경력증명서 1부
- ④ 각종 증빙자료 1부
- ⑤ 기타 첨부자료 1부

7. 유의 사항

- 서류접수는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.
 - 우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.
- 모든 증명서는 최근 1년 이내(단, 어학능력은 2년 이내) 발행분에 한함
 - 단, 주민등록초본은 2017.11.16.이후 발급분에 한함
-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(학위, 논문 등)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또는 신체검사 불합격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 - ※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사에서 불합격자로 판정되거나 연봉협상 결렬 등 본인이 임용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면접시험의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- 합격자 발표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(www.bscc.or.kr)의 커뮤니티-새소식란에 게시합니다.
-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임용포기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결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 및 면접전형 참가자에게 교통비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최종합격자는 2017.12.13.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.
 -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서식 누락/착오 기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지정된 서식은 작성시 (예시) 등 불필요한 부분은 지우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원본은 채용절차 종료 후 개별 요청 시 반환 가능 합니다.
- 실기전형 대상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(재)부산문화회관 경영지원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☎ 채용 담당자 ☎ 051-607-6024

<붙임>

법정 채용 가산점

□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따라 가점부여함

부여대상	부여기준 (각전형별)	비고
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 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 공로자, 공상 공무원, 특별공로 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3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자녀	10%	국가유공자등에 우대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
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2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	5%	
1.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2.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	10%	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제16조
1. 애국지사의 가족 2.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3.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인	5%	
1.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 2. 재해사망 군경 및 재해사망 공무원의 배우자	10%	보훈보상 대상자지원에 관한법률 제33조
1.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의 배우자	5%	
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	10%	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관 한법률 제7조
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가족	5%	
1.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2. 5·18민주화운동 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	10%	5.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
1.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가족 및 기타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2.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3.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 및 자녀가 없이 사망한 5·18민주유공자의 제매(弟妹) 중 1인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	5%	
1. 특수임무 사망자의 유족 및 행방불명자의 가족 2.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 본인	10%	
1.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 의 가족 2.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3.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(弟妹) 중 1인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지원	5%	특수임무수행자지 원및단체 설립에관한 법률 제20조